

**kt노동인권센터와 함께 하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홈페이지 : <http://www.laborright.net> 전화번호: 0505-930-2710 팩스: 0505-930-1107

**<서울지역>**

노동건강연대-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36-10 삼경빌딩 302호 T.02)469-3976~8  
 노무법인 노동과살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1-14 국동빌딩 404호 T.02)833-1185 F.02)833-1186  
 노무법인 살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16 하나빌딩 2층 T.02)702-5973 F.02)702-5976  
 노무법인 참터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4 T.02)701-4760 F.701-4761  
 노무법인 필 -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19 연이빌딩 202호 T.02)702-2272 F.0505-224-2271  
 노무법인 현장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7 2층 T.02)701-1346~8 F.02)701-1357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304호 T.02)3273-8100 F.02)3273-9763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 T.02)2635-0419 F.02)36-4019

**<경기, 인천지역>**

노무법인 승리 -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2가 58-2 평화빌딩 3층 T.031)245-6114 F.031)245-6115  
 노무법인 태일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96 (갈산동 158번지) T.032)529-2018 F.032)232-5134  
 노무법인 현장 인천지사 -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08-1 무명빌딩 201호 T.032)422-0942~3 F.032)422-0975  
 들꽃공인노무사 사무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5층 T.031)248-4635 F.031)248-4639  
 사회화노동정책연구소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28-17 금성프라자김수정노무사 사무소) 402호 T.031)431-7821 F.431-9490  
 평등노동상담소 - 인천 부평구 십정동 295-3 성동빌딩 301호 T.032)201-6331 F.032)434-4762  
 한맥공인노무사사무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7 T.031)271-5100 F.031)271-5101  
 해솔공인노무사사무소 - 경기 양주시 덕계동 421-1 4층 T.031)875-8133 F.031)866-8490

**<강원지역>**

노무법인 참터 -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0 3층 T.033)761-0590 F.033)761-0591

**<충북지역>**

청주노동인권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30 4층 T.043)296-5455 F.043)293-5455

**<대전, 충남지역>**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충남 천안시 두정동 920 정원빌딩 2층 T.041)557-7235 F.041)557-7238  
 민주노총 - 충남 아산시 온양동 1662 제일빌딩 3층 T.041)549-4081 F.041)549-4082  
 대전충남법률원 - 대전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종합복지관 T.042)624-4130 F.042)625-4131

**<대구, 경북지역>**

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 -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4번지 나동 203호 T.054)476-0180 F.054)476-0182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27 1층 T.053)766-2393 F.053)766-2395  
 노무법인 참터 포항지사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0-6 T.054)278-8617 F.054)278-8619  
 노무법인 함께 -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 상가 302호 T.053)763-9858 F.053)763-9854  
 민주노총 대구본부노동상담소 - 경북 대구 달서구 성당동 72-18 T.053)421-0355 F.053)421-8523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무법인 나래 - 부산 동래구 수인동 564 2층 T.051)556-7637 F.051)556-7638  
 노무법인 참터 창원지사 - 경남 창원시 상남동 73-5 경향상가 4층 T.055)262-3329 F.055)275-7345  
 민주노총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울산 북구 연암동 1121-1 오도벨리복지센터 4층 T.052)266-8001 F.052)257-3095

**<전북지역>**

민주노총 군산지부노동상담소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 T.063)465-1316 F.063)465-8767  
 민주노총 익산지부노동상담소 - 전북 익산시 부송동 1106-2 도형빌딩 4층 T.063)852-6112 F.063)852-6107  
 민주노총 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타운 3층 T.063)256-5005 F.063)256-5004

**<광주, 전남지역>**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 광주시 북구 오룡동 1110-34 레드A동 1호 T.062)265-8143~4 F.062)265-8145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대성빌딩 3층 T.062)527-2006

**<제주지역>**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240-23 T.064)721-2191 F.064)753-2192

함께 하자겠습니다.

후원자님의 인적사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KT노동인권센터 활동 소식을 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본인의 동의없는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름	연락처	E-mail
<b>● CMS 후원신청(매월 약정금액이 자동이체됩니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명</li> <li>▪ 예금주</li> <li>▪ 결제일 : 매월 27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번호</li> <li>▪ 주민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금액 : 10,000원</li> </ul>



**KT노동인권센터**



## kt노동인권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kt는 2002년 민영화 이전부터 시작하여 국내 단일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횡수로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사업장이며 급기야 2006년도부터는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라는 인강학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게 되자 2010년4월 10일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노동인권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 공동대표 : 문규현 신부님(전북평화화인권연대 대표), 권영국 변호사(민변노동위원장) 조광복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석균 의장(kt민중동지회)
- 운영위원 : 반기룡 전팀장(2011년 CP양심선언), 박찬성 전팀장(2012년 CP양심선언)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함께), 김현호 노무사(노무법인 현장) kt민중동지회 전직 의장 6명(강세구 이남구 류방상 이재숙 장현일 조태욱)
- 감 사 : 박수호 (전 kt노조 사무처장)
- 집행위원장 : 조태욱 (kt해고자)



## kt노동인권센터가 해온 일은 무엇인가?

- 첫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히는 진상규명작업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법률적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 (대표적 사례-CP대상 여성노동자 김옥희-2011년, 한미희-2013년 승소 판결)
- 둘째, 고용노동부의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011~2012년 이끌어 내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 취하게 함
- 셋째, 고과연봉제 F등급자 집단소송 승소(2013.1.29)
- 넷째, 노동인권백서를 2012.12월 발간하여 KT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알림



## “부당 인력퇴출 막으려면 부당하고 형사처벌 재도입해야” KT노동인권센터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갖는 사회적 의미’ 집담회 개최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2.12.11.

지난 2007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된 부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재도입해 혹자기업의 부당한 인력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주제로 KT노동인권백서 발간기념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센터는 “부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이 재도입되지 않으면 혹자기업이 비밀퇴출프로그램을 악용해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조항이 무력화되고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처벌조항 없어 퇴출프로그램 견제 못해

2007년 7월1일 부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원칙복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 이행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업이 돈만 내면 복직시키지 않아도 돼 구속력이 없다”며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칙복직 판결이 난 원병희씨에 대해 KT는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내고 복직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KT에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센터는 최근 야권 대선후보들에게 부당해고 처벌조항 재도입 공약을 제안했다. 김석균 KT민중동지회 의장은 “KT는 합법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자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억압해 왔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로 전파된다면 노동자들은 설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KT처럼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서 퇴

출프로그램 운영이 예상된다.

실行者·당사자 고통 주는 퇴출프로그램 사라져야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문건이 공개됐고, 두 명의 양심선언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9월 처음으로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노동부는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제조사에 착수했다.

KT 본사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박찬성씨는 “당시 작성한 자료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최근야야 간접적으로 알게 됐고 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을 만났다”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특정 인력을 퇴출시키는 경영방식을 더는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총북본부 총주지사에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밝힌 반기룡씨는 “관리가 퇴출프로그램을 잘 시행해 직원을 퇴출하면 인사고과 A등급을 받는다”며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박정신 고려대 교수·김승호 사 이버노동대학 이사장과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 kt노동인권센터를 후원하기 위한 방법

kt노동인권센터는 kt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고자 생계비와 상근자 활동비 그리고 노동인권 감시와 대응을 위한 사업경비가 필요합니다.

후원 방법은 후원계좌 입금과 CMS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066641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전화 : 02-701-0070, 070-8836-1127, 070-8836-1146, 02-704-4441(팩스)  
홈피 : www.ilovekt.org (부당노동행위 공익제보란 익명 제보를 통해 상담 가능)